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희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7인이 공동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 방지와
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행 서울특별시 조례 5272호로 2012년 3월 15일
타법개정된 것으로,
- 이 조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4조, 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3조,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3조에 따라,
-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
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

□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
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주시길 부탁드립니다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
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
감사하겠습니다.